

## 1. 제정이유

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(안 제2조)

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, 폐폴리프로필렌(PP), 폐폴리에틸렌(PE) 및 폐폴리스티렌(PS) 수입을 금지 함

나.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수출입 금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고시 제정안, 별첨

##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정안

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품목)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, 폐폴리프로필렌(PP), 폐폴리에틸렌(PE) 및 폐폴리스티렌(PS)

제3조(조건부 수입허용)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외적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.

1.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
2.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의 예외적 수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각호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.

③제1항에 따른 수입허용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량, 수입시점 및 수입항구 등에 관한 제한요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